

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에 관한 조서

도면 표시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 또는 물건의 종류	면적 또는 수량	공익사업의 종류 및 토지관리자	이용방법

작성방법

1. 공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물건·시설을 "도면 표시번호"별로 작성합니다.
2. 토지등이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공익사업의 종류와 해당 토지등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"공익사업의 종류 및 토지관리자"란에 적습니다.
3. 토지관리자가 해당 토지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취득 또는 사용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"이용방법"란에 적습니다.